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완전표시제 도입 등〉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936호)

2025.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개요	1
II. 주요내용별 검토	3
1.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완전표시제 도입	3
2.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 도입	19
3. 표시의무 위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폐기명령 등	27

I. 개요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93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2. 6.

(3) 회 부 일 : 2025. 2.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이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하고 있어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되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 이하인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를 하도록 규정함.

또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아닌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 또는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위반 시 폐기 명령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및 제17호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완전표시제 도입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비의도적혼입식품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되,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 등임(안 제2조제16호 및 제17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5. (현행과 같음) 16. “ <u>유전자변형식품등</u>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이하 “ <u>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u>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u>	<u>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말한다.</u> <u>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u> <u>나.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u> 17.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말한다. <u>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의 비율이 1,000분의 9 이하인 식품등</u> <u>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 이하인 유전자변형식품등</u>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u>유전자변형식품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현행	개정안
<u>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u> 1. <u>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u> 2. <u>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u> <u><신 설></u> ② <u>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③ <u>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u>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삭 제></u> <u><삭 제></u> ② <u>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u> ③ <u>제1항 및 제2항에</u>----- ----- ----- ----- -----. ④ <u>제1항 및 제2항에</u>----<u>표시의무자 및</u>-----<u>등에</u>----- -----. 제97조(벌칙) ----- ----- -----.

현행	개정안
1. 제12조의2제2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제3항, 제37조제3항·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제10항, 제49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1.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 ----- -----
2. ~ 10. (생략)	2. ~ 10.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비의도적 혼입식품등을 제조장으로 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나. 검토의견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그 법적 근거를 각각 두고 있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고시)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근거 법률 >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 ①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이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한다.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3. (생략)

□ 동 고시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i) 「식품 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의 유전자변형식품 및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ii)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iii)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1)에 따른 축산물 중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축산물, iv)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2)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콩나물, 콩잎처럼 해당 품목의 종자를 싹틔워 기른 채소 등을 포함함)을 말하며,

제3조에서는 표시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제18조3)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면서,

①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의도하지 않게 혼입되었는데, 혼입치가 3% 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②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3) 「식품위생법」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①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식용(食用)으로 수입·개발·생산하는 자는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식품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면제해 주고 있음.⁴⁾

< 현행법령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개요⁵⁾ >

구분	내용
유전자변형 식품 개념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분류학에 의한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물·미생물의 유전자를 변형시킨 것을 원재료로 하거나 또는 이용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표시대상	GMO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GMO 유전자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등 * 승인품목(6종) :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표시면제	① GMO농산물이 의도하지 않게 혼입된 경우(비의도적 혼입치 ³⁾ 3% 이하까지는 관련 서류 구비 시 GMO 표시 면제 * 농산물 재배·유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MO가 혼입될 수 있는 비율 (대만 3% 이하, 일본 5% 이하, 호주 1% 이하, EU 0.9%이하) ②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GMO 유전자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과학적 검사가 불가능한 식용유지류, 당류 등

4)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고시)

제3조(표시대상) ①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가. 구분유통증명서

나. 정부증명서

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2.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

5)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년 1월 기준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⁶⁾은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등 6개 품목의 농산물인데,

현행 유전자표시제도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표시의 예외를 두고 있어, 6개 품목의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올리고당, 물엿, 옥수수기름, 전분당, 카놀라유 등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볼 수 없는 실정임.

- 참고로, 2023년 기준 국내에 반입된 식품용·사료용 유전자변형 생물체⁶⁾는 약 1,028만 톤(34.2억 달러)에 달하고, 이 중 식품용이 12%(121.7만 톤)의 비중을 보였으며, 작물별로는 옥수수가 전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89.6%에 해당하는 921.9만 톤이 수입되었고, 대두(92.8만 톤), 면화(13.5만 톤)가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국내 반입 유전자변형생물체 현황 >

(단위: 만 톤, 백만 불)

용도	총계		옥수수		대두		면화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총계	1,028.2	3,427	921.9	2,795	92.8	579	13.5	52
식품용	121.7	651	28.9	72	92.8	579	-	-
사료용	906.5	2,776	893.0	2,723	-	-	13.5	52

자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23년 유전자변형생물체 주요 통계」

6)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을 말함.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식품안전을 위하여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사용한 식품등에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요구(이른바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안 발의, 국정감사, 국민청원 등을 통하여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2024년 3월 발표한 ‘2023 유전자변형생물체 주요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원료의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 국민청원 및 관련 법률안 등 발의 현황 >

구분		발의자 등	주요 내용
식품위생법 개정안	제20대	남인순, 김현권, 윤소하, 김광수 의원안 등 4건	유전자변형 DNA 및 단백질의 잔류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
	제21대	김승남, 위성곤, 배진교 의원안 등 3건	
	제22대	임미애 의원안	유전자변형 DNA 및 단백질의 잔류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7)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인식, 태도, 법·제도 인지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2023 유전자변형생물체 주요 통계 관련 조사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이며, 만 19세부터 64세까지의 성인 남녀 800명(세종, 제주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함.

구분		발의자 등	주요 내용
		남인순 의원안	식약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유전자변형 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21대	양의원영의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등을 하려는 자에게 유전자변형식품에 유전자변형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비유전자 변형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Non-GMO’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비의도적혼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2024년 국정감사		남인순, 이개호의원	품목별 단계적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결정해서, GMO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것
2018년 국민청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7개 단체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GMO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은 제품(유지류, 당류 등)까지 GMO 표시대상 확대(완전표시제) 등 요구

□ 이에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경우에는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되,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제

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식품산업계는 가공·조리용으로 사용하는 대다수 식용유, 전분당 등이 GMO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개선 없이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경우 식품 원가 비용을 상승시켜 국내 식품산업 발전의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와 식품업계 등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는바, 그간 정부에서는 협의를 통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 소비자·시민·생산자 단체, 산업계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는 사회적 파급 영향이 적은 품목부터 GMO 완전표시제를 우선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품목별 단계적 도입 방안 등을 논의 중에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⁸⁾

8) [참고 2]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 운영 현황

둘째, 개정안은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전자 변형식품등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면제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 변형 DNA,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 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어떤 품목이 해당되는지 예측이 곤란하고 포괄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셋째, 현재 「유전자 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고시) 제3조에서는 유전자 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 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 유전자 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비의도적 혼입 비율을 현행 3% 이하에서 0.9% 이하로 강화하고 있음.

비의도적 혼입 비율을 강화하는 경우 수입 원재료의 가격 상승 및 소비자 물가 상승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의도적 혼입 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넷째,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유전자 변형이 이루어진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들 유전자 변형식품등이 유전자 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사후 검증

및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⁹⁾

- 한편, 안 제2조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등”과 “비의도적혼입식품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식품”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및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37호)에서도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및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서는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함)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도 “식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도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¹⁰⁾에서는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

9)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

법」 제7조 등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에 건강기능식품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 참고로 “준용”이란 사전적 의미로 “표준으로 삼아 적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내용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식품”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식품”과 달리 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 체계를 고려하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므로,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

정을 준용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규정
2. 건강기능식품의 재검사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23조에 따른 식품등의 재검사 규정
3.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지정 규정
- 3의2. 긴급대응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17조에 따른 긴급대응 규정
4.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규정
5. 소비자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규정
6.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규정
7. 건강기능식품의 자진 회수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회수 규정(이 경우 영업자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하고, 건강기능식품에는 같은 법에 따라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8.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규정
9. 공표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73조에 따른 공표의 규정
10.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86조에 따른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의 규정

항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것인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등 의견

1) 식품의약품안전처

- GMO 완전표시제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Non-GMO 원료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완제품 가격상승,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 증가, 완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불가로 인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GMO 표시기준 강화(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현행 3% 이하에서 0.9% 이하로 변경)는 국내 산업 경쟁력 악화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 국내외 사회적·산업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식품산업협회

-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잔존하지 않은 식품에까지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경우 소비자의 혼란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Non-GMO 원료수급 불안정성과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서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3) 한국전분당협회

- GMO 완전표시제 시행이 소비자의 인식개선과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경우 식품업계의 혼란과 유통비용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특히 비의도적 혼입치 0.9%의 옥수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사가 없어 수입가격도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음.

4) 한국장류협동조합

-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대한 원료 수급 불안정성 및 이로 인한 물가상승,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며, 비의도적 혼입 비율을 0.9%로 설정할 경우 원료 및 제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수입단계 원료 정량검사에 대한 관리비용이 부과되어 자칫 모든 식품에 GMO임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5) GMO반대전국행동

- 2000년부터 국민들은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해왔는데, 개정안은 GMO 완전표시제가 아니라 식약처장이 정한 식품은 표기한다는 내용이라 국민들의 요구와 전혀 맞지 않음.

2.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 도입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아닌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은 비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 구분유통증명서 등을 갖추었을 경우에 한하여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등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등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지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려는 것 등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3(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u>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아닌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이하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었을 경우에 한하여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u>

현행	개정안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2제2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제3항, 제37조제3항·제	<u>형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u> 1.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u> 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한 비의도적혼입식품등임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위 시험·검사의 대상물이 채취·선정되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증명서가 첨부된 시험·검사성적서에 한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등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등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지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97조(벌칙) ----- ----- -----. 1.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현행	개정안
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 · 제10항, 제49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 ----- ----- -----
2. ~ 10. (생략)	2. ~ 10.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고시) 제5조¹¹⁾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방법을 규정하면서 제3조제1항¹²⁾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서,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¹³⁾에

11)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5조(표시방법)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12) 제3조(표시대상) ①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0.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게 됨.

- 예를 들어, 유전자변형을 하지 않은 대두를 원재료 함량의 50% 이상 사용하거나 원재료 함량 중 대두가 가장 많이 사용된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음. 다만, 비의도적으로 유전자변형 대두가 1%라도 포함된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없음.

□ 즉, 현행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는 GMO가 0%일 때만 가능하며, 표시대상이 아닌 유전자변형농산물과 이를 사용한 가공식품에 Non-GMO를 표시하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에 해당하게 됨.

□ 이에 개정안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아닌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과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은 비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¹⁴⁾ 및 제8조¹⁵⁾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임수축산물이 아닌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

1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검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⑨ (생략)

15) **제8조(국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시험·검사할 능력이 있는 기관(이하 “국외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수출국 정부(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
2.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검사기관의 지부를 포함한다)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비의도적혼입식품등임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¹⁶⁾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었을 경우에 한하여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표기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비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 알권리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비의도적 혼입 비율’이란 농산물을 수입·생산·유통 등 취급 과정에서 구분하여 관리한 경우에도 그 속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비율을 말하므로,

비의도적혼입식품등에 ‘GMO가 아니다’라는 의미의 ‘비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EU와 미국은 Non-GMO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조항은 없고 GMO가 아닌 식품에 Non-GMO를 표시하는 것은 사업자의 자율임.
- 일본은 GMO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Non-GMO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비의도적 GMO의 혼입이 5% 이하인 경우는 ‘분별생산유통관리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표시만 가능하고, GMO의 혼입이 0%인 경우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이 해외에 설립·운영하는 기관
② ~ ④ (생략)

16) 다만, 식약처 소속 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위 시험·검사의 대상물이 채취·선정되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증명서가 첨부된 시험·검사정적서에 한함.

는 ‘GMO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Non-GMO 표시제품에는 비의도적 혼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¹⁷⁾

□ 또한, 안 제97조제1호에서는 제12조의3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2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은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¹⁸⁾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며, 동법 제27조제2호¹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

17) 유병덕(2024)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18)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한다), 내용량, 제조방법(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한다),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
2. 식품등의 제조연월일, 생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및 산란일에 관한 사항
3.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
4. ~ 5. (생략)

19)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등 의견

1) 식품의약품안전처

-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는 ‘GMO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표시에 해당하고 소비자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비의도적 혼입치 개념의 인정 및 확대(불인정→0.9% 이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한국식품산업협회

- 비유전자변형식품에 유전자변형 원재료의 혼입 비율을 병기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사항이며, 비의도적 혼입여부에 대한 과학적 검증방법이 없음.

3) 한국장류협동조합

-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는 수입 완제품에 대한 국내식품의 역차별 이슈, 소비자 혼란 가중, 현실적인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삭제가 필요함.

4) GMO반대전국행동

-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는 GMO 완전표시제와 연동되는 성격이

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있으며, GMO 완전표시제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불필요한 표시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는 GMO 완전표시제 시행 후, GMO 완전표시제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을 표시하기 위해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함.

3. 표시의무 위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폐기명령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해당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이 국민 건강, 농업,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및 제1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4(폐기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유전자변형식품등 2. 제12조의3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유전자변형식품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전자변

현행	개정안
<신 설>	형식품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유전자변형식품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직접 폐기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폐기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실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이 국민 건강, 농업,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생산공정·이용시설·사업장·보관장소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행	개정안
	<u>협조하여야 한다.</u> ③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u> ④ <u>유전자변형식품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⑤ <u>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 (표시의무 위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폐기명령) 안 제12조의4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유전자변형식품등, 제12조의3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폐기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폐기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 제72조(폐기처분 등)²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자가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2조의4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입법 체계상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은 현행법 제12조의2에 제2항을 신설하면서 제12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규정한바, 현행법 제72조제1항의 ‘제12조의2제2항’을 ‘제12조의2제3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12조의3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며,

동법 제15조에서는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거나 식품등을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등이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²¹⁾하고 있

20) 「식품위생법」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 안전 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4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음을 고려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실태조사) 안 제13조
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식품등
이 국민 건강, 농업,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하여 관련 시설·생산공정이용시설·사업장·보관장소 및 그 주변

2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
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영업소 명
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한다), 내용량, 제조방법(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한다),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
2. 식품등의 제조연월일, 생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및 산란일에 관한 사항
3.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
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
4. ~ 5. (생략)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
거나 식품등을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등이 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
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
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해 식품등의 회수, 압류·폐기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는 「식품위생법」 제45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지역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매년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안 제2조제16호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하여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가 아님.

- 예를 들면 유전자 변형 옥수수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이고, 유전자 변형 대두로 만든 두부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해당함.

-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자연 생태계에 퍼질 경우, 기존의 토착종과 경쟁하면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재배와 관련하여 환경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²²⁾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에 유통되는 유전

2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에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구시설·생산공정이용시설·사업장·보관장소 및 그 주변지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자변형생물체가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구시설·생산공정이용시설·사업장·보관장소 및 그 주변지역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면, 유전자변형식품등은 가공된 형태이므로 농업, 환경 및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등 의견

1) 식품의약품안전처

- (폐기명령 관련) 「식품위생법」 제72조에서 제12조의2제2항(유전자변형식품등이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등) 위반시 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기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중규제 여부 등 별도 조문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환경영향 등의 실태조사)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는 위반시 행정제재 사항으로 실태조사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식품위생법」 제22조에서는 식품등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한국식품산업협회

- (폐기명령 관련)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식품등 또는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위반 시 폐기명령을 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는 식품안전 측면의 문제가 아닌 표시사항에 관한 문제로, 해당 식품에 대한 폐기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생각되며, 표시 위반 사항은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환경영향 등의 실태조사)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실태조사를 법으로 규정하고자 함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에 따라 이미 규정되고 있는 사항으로, 「식품위생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됨.

3) GMO반대전국행동

- (폐기명령 및 환경영향 등의 실태조사 관련) 개정안은 국내에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타당하다고 됨.

문 의 처
02)6788-5493

【참고 1】	주요국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현황
--------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대만	중국	EU
완전 표시제		×	×	×	△	△	○
표시 대상	승인 품목	6종 대두, 옥수수, 면화, 사탕무, 카놀라, 알팔파	9종 대두, 옥수수, 면화, 사탕무, 카놀라, 알팔파, 감자, 파파야, 겨자(갓)	14종 대두, 옥수수, 면화, 사탕무, 카놀라, 알팔파, 감자, 파파야, 사과, 파인애플, 호박, 사탕수수, 연어, 돼지	5종 대두, 옥수수, 면화, 사탕무, 카놀라	4종 대두, 옥수수, 카놀라, 토마토	5종 대두, 옥수수, 면화, 사탕무, 카놀라
		6종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	9종 농산물 및 33개 가공식품	14종 농수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	5종 농산물, 6개 1차가공품 ¹⁾ , 9개 고차원가공품	4종 농산물, 8개 가공식품 ²⁾	5종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
		기준	GMO 유전자가 남아있는 식품 (함량 3순위 이내, 5% 이상인 경우)	GMO 유전자가 남아있는 식품	GMO 유전자가 남아있는 식품	GMO 잔류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식품 (20종)	GMO 잔류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식품(12종)
식용유, 당류 등 표시		표시제외	표시제외	표시제외	표시	표시 (식용유만 해당)	표시
비의도적 혼입치		3%이하	5%이하	5%이하	3%이하	0%(불인정)	0.9%이하

¹⁾ 1차가공품(두부, 두유류, 순두부류, 반건조두부, 두부피, 대두단백미트제품)
고차원가공품(대두유, 간장류, 옥수수유, 옥수수전분, 옥수수수리, 면실유, 카놀라유, 사탕무당, 사탕무당밀)

²⁾ 8개 가공식품(대두분, 대두유, 대두박, 옥수수유, 옥수수분, 유채씨유, 유채박, 토마토소스)

【참고 2】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 운영 현황
---------------	------------------------------

일 자	논의내용 및 회의결과
제1차 (‘20.1.30)	▶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 구성 배경, 협의회 운영 위탁사업 결과 공유 -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 위탁사업 결과 도출된 제안사항을 공유하고, 제안내용 논의 순서는 2차 협의회에서 추가 논의
제2차 (‘20.2.11)	▶ GMO 완전표시제 품목별 단계적 도입 방안 등 - 논의 순서는 협의회 진행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변경 -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품목별 단계적 도입 방안의 경우 품목, 적용 시기 등에 대해 지속적 논의를 통한 면밀한 검토 필요 - GMO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각 단체별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제출 요청
제3차 (‘20.11.4)	▶ 그간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 공유 및 안건 논의 순서 검토 - 실무협의회 논의 안건 중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적은 ‘Non-GMO 표시 기준 개선’에 대해 우선 논의하는 것을 제안 - 논의순서는 식약처 결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에 대부분 위원 동의
제4차 (‘20.12.9)	▶ Non-GMO 표시기준 개선 논의 - Non-GMO 표시 식품의 비의도적 혼입 인정 기준 0.9%에 대부분 동의 하였으나, 일부 위원은 실태조사 필요성 제기
제5차 (‘20.12.17)	▶ Non-GMO 표시 개선 안건에 대한 위원 모두 동의 - 국외 기준 및 수입 비유전자변형 대두의 비의도적 GMO 혼입치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Non-GMO 강조 표시에 대한 비의도적 혼입치 0.9% 이하 인정에 모든 위원 동의
제6차 (‘21.3.9)	▶ GMO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개선 방안 - 연도별 소비자 인식도 조사, 팸투어, 다큐제작 등 소비자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필요(산업계) ▶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따른 원료수급 문제점 등 파급효과 -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생산·판매 불균형에 따른 피해가 크고 국내 자급률이 낮아 수입 GMO 농산물 사용 불가피(산업계)
제7차 (‘21.4.23)	▶ 품목별 단계적 GMO 완전표시제 도입 방안 검토 - 대두유 등 품목별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하여 완전표시제 우선 도입 품목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 적극 동의(소비자·시민단체) - GMO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완전표시제 단계적 도입에 대한 논의 불가(산업계)
제8차 (‘21.6.1)	▶ 대두유 대상 GMO 완전표시제 도입(안) 검토 - 품목별 검토, 객관적 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

	나, 빠른 시일 내 결론 도출을 통해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 필요 - GMO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후 완전표시제 도입 논의 타당
제9차 (‘21.6.17)	▶ 카놀라유 대상 GMO 완전표시제 도입(안) 검토 - GMO 완전표시제 도입 시 원료(카놀라, 조유) 수급 문제, Non-GMO 원료 사용으로 제품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대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
제10차 (‘21.7.16)	▶ 옥수수유 및 면실유 대상 GMO 완전표시제 도입(안) 및 향후 논의 계획 검토 - 옥수수유, 면실유 포함 식용유지 품목별 생산·수입현황 및 관련 용역 사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도입 품목 선정 제안 - 제11차 회의에서는 소비자 인식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단체별 의견수렴
제11차 (‘21.8.31)	▶ 유전자변형식품의 소비자 인식개선 방안 논의 - ‘20년 대국민 유전자변형식품 인식도 조사 결과 공유 -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제고 필요성에는 산업계, 시민단체 등 모두 동의하나 인식 제고 사업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이견 존재
제12차 (‘21.9.29)	▶ 당류 대상 GMO 완전표시제 도입(안) 검토 - 품목별 단계적 표시제 강화 추진을 위해 품목별 생산수입현황을 포함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 추가비용, 소비자 편익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 필요
제13차~15차 (‘21.10.28, 11.23, 12.7)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품목별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사업 결과 공유 및 의견청취
제16차 (‘22.01.19.)	▶ ‘21년 실무협의회 논의결과 정리 및 ‘22년 실무협의회 운영(안) 논의 - GMO 완전표시제 단계적 품목별 도입 방향 및 향후 중점 논의 안건 합의 ^①완전표시제 우선 도입품목 선정 및 단계적 확대, ^②Non-GMO표시기준 (0.9%이하) 신속개정, ^③표시면제 비의도적 혼입치 조정(3→5%), ^④소비자 인식개선, 사후관리 방안 등
제17차 (‘22.10.31.)	▶ 향후 실무협의회 운영 방향 및 GMO표시제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공동 추진 방안 논의 - 정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위해 협의회 공동 추진 동의, 향후 소비자·시민단체 측 의견 수렴하여 추가 논의
제18차 (‘23.01.30.)	▶ ‘GMO 표시 관련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공유 및 GMO 표시 관련 대국민 여론 합동 조사(‘23년~) 방안 논의 *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온라인조사(식약처 용역사업: ‘22.12., (주)엠브레인리서치) - (산업계) ‘23년 GMO 대국민 여론 합동조사 공동 추진 합의 -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문조사 문항 및 방법 논의 ▶ GMO 관련 소비자 인식 개선 방안에 대한 단체별 역할 논의 등
제19차 (‘23.02.28.)	
제20차 (‘23.03.28.)	

제21차 (‘23.04.28.)	▶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 운영 방안 논의 - 양측 간 합의 가능한 수준의 공동 합의를 통해 협의회 정상화 방안 논의
제22차 (‘23.06.30.)	
제23차 (‘23.08.28.)	▶ Non-GMO 자율 표시 확대 방안* 등 논의 * 현행 GMO 표시면제 식품(간장, 유지류 등)의 Non-GMO 원재료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Non-GMO 자율 표시 논의
제24차 (‘23.11.27.)	▶ ‘23년 GMO 표시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방안 등 논의 * 조사 대상 및 설문 문항 검토, 전문가 검토에 대한 의견 등
제25차 (‘24.03.27.)	▶ ‘23년 GMO 표시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주요 결과 공유 * GMO 안전성, 안전관리 및 표시제도 등에 대한 인식도 변화 등
제26차 (‘24.05.28.)	▶ GMO 표시 확대 시행 시 표시기준, Non-GMO 자율 표시 우선 추진 방안 등
제27차 (‘24.08.14.)	▶ Non-GMO 자율 표시 시행 시 증빙서류,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 등 논의 - Non-GMO 표시 증빙서류, 비의도적 혼입치(불검출) 등 잠정 합의
제28차 (‘24.11.27)	▶ ‘24년 GMO 표시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Non-GMO 자율 표시 확대 방안 및 GMO 표시 확대 방안 등 논의